



# 목 차

<b>I. 온천법</b> .....	<b>1</b>
1. 총론 .....	3
2.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 .....	8
3. 온천의 이용 및 보전관리 .....	14
4. 수수료 및 벌칙 등 .....	22
5. 온천전문검사 지침 .....	26
<b>II. 온천운영</b> .....	<b>33</b>
1. 온천에 대한 이해 .....	35
2. 온천 현황 .....	37
3. 향후 온천의 내실화 방안 .....	43
4. 온천의 의료적 효능 소개 .....	48
5. 행정사항 .....	56
<b>III. 공중위생관리</b> .....	<b>59</b>
1. 총론 .....	61
2. 공중위생영업 신고 .....	66
3. 공중위생업소 관리 .....	68
4.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 벌칙규정 .....	73



# I. 온천법

1. 총론
2.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
3. 온천의 이용 및 보전관리
4. 수수료 및 벌칙 등
5. 온천전문검사 지침



# 1. 온천법

## 1. 총론

### 가. 온천법의 목적 (법 제1조)

- ▶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나. 정 의 (법 제2조)

- ▶ 지하로부터 용출(湧出)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제1호)

#### 〈영 제2조〉

1. 질산성질소( $\text{NO}_3\text{-N}$ )는 10mg/L 이하일 것  
(무기비료, 생활하수, 공장폐수에서 발생)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xt{C}_2\text{Cl}_4$ )은 0.01mg/L이하일 것  
(유해화학 물질로서 무색의 액체이며 금속세정제에서 발생)
3. 트리클로로에틸렌( $\text{C}_2\text{HCl}_3$ )은 0.03mg/L이하일 것  
(금속세정제, 드라이클리닝용제, 소화제 등에서 발생)

- 온천우선이용권자(제2호) :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 소유권자
- 온천종사자(제3호) :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
- 온천전문검사기관(제4호) : 온천과 관련한 모든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 다.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법 제23조)

-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내 토지굴착과 온천의 이용에 대한 우선 허가 및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용자·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온천개발계획 수립 및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 온천우선이용권자 >

- ①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②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리가 이전된 자

### ☞ 온천지침

#### 【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없을 경우 】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온천개발이 불가능하므로 신속·원활한 온천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온천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자를 “차순위 온천우선이용권자”로 인정하여야 함

## 라.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법 제7조, 규칙 제4조)

- 법 제7조제2항의 등록기준에 의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등록기준 증명서류

## [참고]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현황 (9개기관)

(2014년 4월 현재)

순번	기관명	소재지	비고
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031)420-3732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전 유성구 과학로 124	042)868-3085
3	(주)한국중앙온천연구소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	02)2027-3470
4	(주)하나 엔지니어링	울산 울주군 온양읍 온양로38-2	031)345-0507
5	(주)한국건업엔지니어링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9	02)894-2472
6	(주)세기종합기술공사	충남 아산시 시민로457번길 11	02-578-5001
7	중앙컨설턴트(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32길 23	02-2156-6031
8	(주)옥수개발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18길 28-1	02-1577-1940
9	(주)진산	제주 제주시 서광로2길 23	064-756-8868

## [참고]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온천조사·검사 종류

검사시기	종 류	내 용	관련규정	
굴착허가신청시	온천부존조사	온천자원 부존가능성 확인조사	법12조③ 영13조①-4	
온천발견신고 수리시	온천공 조사	온천의 수온, 수량, 수질 등	법21조② 규칙13조①② [별표 5]	
	온천공 영향조사	인근공에 대한 영향조사	규칙13조②-3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변경해제시 온천이용허가시	온천자원 평가조사	온천원 보존실태 및 상황변화 온천의 온도, 수질, 성분 (지구내 1일 적정 양수량)	법10조 영7조 규칙5조	개발계 획
			법16조 영17조 규칙10조	이용허 가
이용허가일부터 5 년마다	정기온천 자원조사, 성분분석	적정양수량, 수위변동상황, 수질·성분변화 등 온천의 특성 (온천원 1일 적정 양수량) ※ 온천원보호지구는 지구내 모든공 일제조사 실시 주요성분, 온도, 이용에 따른 효과, 주의사항	법24조② 규칙15조① 법19조①	
매 1년마다	수질검사 성분분석 (유황, 유리탄산)	수질 적합여부, 성분함량, 금기증, 주의사항	법19조 규칙12조 [별표4]	

## 마. 국가 등의 책무 (법 제3조, 법 제3조의2)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천의 발전, 온천문화 창달과 온천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
- ▶ 지방자치단체는 온천발전 신고를 수리한 이후에는 당해 온천의 원활한 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온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이행
- ▶ 안전행정부장관은 온천발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지자체는 그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이행

### ■ 기관별 온천정책 추진

#### ○ 중 앙

- 온천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 온천협회 승인 및 지도관리,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및 지도관리
- 국민보양온천 지정승인, 온천도시의 지정 등
- 온천수의 음용화 추진, 재활용대책 수립

#### ○ 시·도지사

- 온천발전지원 세부계획 수립·이행
- 온천개발계획 승인, 국민보양온천 지정 등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및 온천원보호지구 고시, 온천공보호구역 승인

#### ○ 시장·군수·구청장

- 온천발전지원 세부계획 수립·이행
- 온천굴착허가, 동력장치설치허가
- 온천발전신고수리,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온천공보호구역 고시
- 온천개발계획 및 온천원보호지구 신청, 온천이용허가
- 정기온천자원조사(5년마다), 수질 및 성분검사, 출입검사 등

## 바. 온천협회 (법 제27조, 법 제27조의2, 영 제21조, 규칙 제19조)

- ▶ 온천종사자는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 유지관리 및 온천종사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하여 온천협회를 설립
- ▶ 협회는 법인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인가

### ○ 설립목적

- 온천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
- 온천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회원의 권익향상에 주력
- 합리적 온천 경영체계 확립 및 온천사업의 건전한 운영능력 배양
- 온천에 관한 연구와 온천지식의 보급으로 공공의 복리·건강증진 및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

### ○ 협회의 사업 등

-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협회 회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 온천이용시설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지도·감독
  -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온천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조사·연구사업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에 이 법에 따른 사업의 위탁으로 사용되는 경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참고]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 설립현황

1. 설립 인가일 : 2007. 7. 11.
2. 사무실소재지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1(당주동) 영진빌딩 301호
3. 전 화 번 호 : 02-720-5004 (팩스 : 02-723-5003)
4. 임원구성 : 22명(회장 1, 명예회장 1, 고문 3, 부회장 1, 감사 1, 이사 15)

## 2.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

### 가. 온천의 굴착

#### ■ 온천굴착신고 (법 제12조, 영 제13조, 규칙 제7조)

- ▶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를 확대하거나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 포함
  -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 굴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할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얻은 자
- ▶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
- ▶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또는 토지굴착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
  -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 토지의 원상회복 (법 제13조, 영 제14조, 규칙 제7조의2)

- ▶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거나 온천이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 ▶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
- ▶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15조의 규정 준용

## ■ 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제한 (법 제15조, 영 제16조)

- ▶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는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없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가정생활용수로 사용할 경우 예외
  - ※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33조제2호)
- ▶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 건설공사 등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온천수의 용출량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온천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5조)

## ■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 경우

- 공공시설의 업무용, 농업용수 공급용
-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냉탕, 샤워시설 등)
- 1일 양수량 기준으로 30톤 이내로 사용하려는 경우
  - ※ 온천지구내 음식점 등 소규모 영업장의 지하수 이용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은 가급적 불허가 조치

## 나. 온천발견 신고 및 취소

### ■ 온천발견신고 (법 제21조)

- ▶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깊이·온천공의 지름 등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 ※ 벌칙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2조제1호, 제4호)
    - 온천발견 미신고자(법 제12조제4항), 허위신고자(법 제21조제1항)

## ■ 온천발견신고 수리 (법 제21조, 제22조, 규칙 제13조)

- ▶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시 제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검사결과와 당해 온천이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고를 수리(受理)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고인이 부담
  - 신고시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

## 다.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법 제5, 6조, 영 제3, 4, 5조, 규칙 제3조)

- ▶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중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할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구역의 범위 3만제곱미터 이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 온천발견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가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시·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또는 지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시·도지사가 승인하면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함

## 라. 온천개발계획

### ■ 온천개발계획 수립·변경·취소(법 제10조, 영 제7,8,9조, 규칙 제5조)

- ▶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그 기간에 개발계획을 수립

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음

- ▶ 온천개발계획에는 온천이용시설 및 주변환경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 개발계획의 대상지역이 다른 법령에 의해 지정된 개발지구 안에 있다면 타법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적합하게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시장·군수 및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10조 제2항의 각호의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이에 적합하게 당해 온천개발계획을 조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법 제11조, 규칙 제6조)

○ 온천개발면적(제곱미터) = 66.2 × 1일 적정 양수량(톤)

※ 온천개발지역의 토지가 온천개발자의 소유일 경우 10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개발할 수 있음

#### ■ 온천개발계획의 조정 (법 제10조 제2항)

-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 방향
- 온천자원의 개발·이용·관리·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정비에 관한 사항
- 폐기물·하수 처리 등 주변환경 정비 및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타법에 의한 계획에 적합한 개발계획 수립 (법 제10,10조의2~4조)

- 온천원보호지구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개발지구로 되어 있는 경우, 동지구에 대한 온천개발계획 수립시 타법에 의한 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함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 개발촉진지구의 기본계획
  -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 공원계획
  -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 관광지 등 조성 계획·개발계획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 산업단지개발계획

## ■ 온천개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 사항

- 의제처리 대상 : 30개 법률 69개 조항
  - 온천법 제10조의2제1항에 있는 30개 법률 69개 조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미리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신고·결정·승인·지정·인가·면허·협의를 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실시

- ▶ 종전에는 온천개발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실시하였으나, 온천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개정된 온천법('10.2월 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만 실시

## 마.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법 제10조의2)

- ▶ 시·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여야 함
  - ※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취소 시에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함

## 바. 동력장치설치의 허가 (법 제14조, 영 제15조, 규칙 제8조, 제8조의2)

- ▶ 온천의 채수를 위하여 동력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동력장치와 동일한 성능의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33조제1호)
- ▶ 동력장치의 설치로 인하여 다른 온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력장치 설치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사유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 동력장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를 설치할 때에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4조제1호)

### 3. 온천의 이용 및 보전관리

#### 가. 온천의 이용허가 (법 제16조, 영 제17조, 규칙 제10조)

- ▶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 경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적정한 양수량을 초과할 수 없음
- ▶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 포함)에서 공중의 음용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나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이용을 허가할 수 있음
  - ※ 온천을 허가받지 않고 이용할 경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32조제2호)
  - ※ 허가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3조제3호)
- ▶ 시장·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천이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불허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천과 관련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며,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온천표시를 사용할 수 없음

#### ■ 허가의 신청서류

- 온천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온천이용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함
  - 온천의 이용계획서
  -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법 제19조, 규칙 제12조)
  - 온천공 현황(양수시험결과 포함)

-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이용허가 신청자와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 부동산 등기부 등본(목욕용 허가신청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을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첨부

## ■ 허가의 기준

- 온천의 이용허가는 산업용과 난방용보다는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을 위한 허가를 우선하여야 함
- 다만, 온천개발계획에 의하여 온천을 목욕용 또는 음용에 이용하고도 남는 경우
  -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공중시설
  - 온천원보호지구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음
  - ※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온천법시행규칙 등에 명기되어야 가능함

## ■ 온천이용이 가능한 산업·공중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에 따른 양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 사목에 따른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및 같은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제조시설
-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제조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스키장 및 수영장 시설

## ■ 온천허가량

- 온천이용허가량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조사한 1일 적정 양수량의 범위안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 원칙 :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지정당시 온천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한 1일 적정 양수량의 범위내
  - 예외 : 온천수 이용량의 부족,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추가 확보한 온천수의 1일 적정 양수량 범위내 가능

## 나. 일시이용 허가 (영 제17조제4항)

### ■ 일시이용허가 요건

-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승인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인 이용허가
- 온천우선이용권자이면서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 안에 같은 명의로 준공허가를 받은 목욕장·숙박시설 등 온천이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
- ※ ‘목욕장과 숙박시설’ 이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과 숙박업에 해당되는 시설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시설

### [참고]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과 숙박시설 정의

-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

#### [숙박업 제외시설]

-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객실이 7실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 “목욕장업”이라 함은 손님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

#### [목욕업 제외시설]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 ■ 허가량 및 허가기간

- 이용허가량 기준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전 - 1일 적정 양수량의 50%
- 이용허가기간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온천개발계획)에 의한 정식 허가시까지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1년의 범위내에서 1회 기간 연장 가능
    - ※ 일시이용허가 후 3년 경과시까지 온천원보호지구(구역) 지정 등 개발절차 미이행시 원칙적으로 연장허가 금지

## 다.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법 제18조)

### ■ 온천이용허가 취소

- 온천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온천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지하수를 섞어서 사용한 때
  -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온천이용의 제한 명령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에 대한 예방 및 온천이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1년 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수질·성분 검사시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 3개월 내에 재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이 나올 때
- 시장·군수는 온천이용허가 취소 처분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 ■ 온천과 관련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 금지

-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며, 규칙에서 정하는 온천표시를 사용할 수 없음
-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라 함은 온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함
- 위 조항의 표시·광고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함

### ① 온천수 공급 배관관리

- 온천이용을 받은 자는 온천수에 지하수를 섞어 사용하면 안되며, 위반시 온천이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 됨
- 온천수 공급배관 파이프라인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관리가 용이하도록 조치
  - 온천이용시설 신규설치시 온천수 배관라인에는 빨강색, 지하수 배관라인에는 파랑색으로 표시(테이프 피복 가능)
  - 기존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온천수 또는 지하수 공급관로를 따라 2~3미터 간격으로 5cm내외의 테이프로 표시

### ② 온천이용시설은 온천수 이용에 대한 1일 관리대장 작성·비치

- 온천이용허가량에 의한 사용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온천이용시설에서는 온천공별로 온천수 사용량 등을 작성한 대장 관리

## 라. 온천의 보전·관리

### ■ 온천자원의 보전·관리 (법 제24조, 규칙 제15조)

- ▶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시설의 개선 기타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26조제2호)
- ▶ 시장·군수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새로운 온천에 대한 발견신고를 수리 할 수 없으며 온천이용허가나 이용허가의 연장 등을 할 수 없음

## ■ 온천자원의 관측 · 정보체계 구축 (법 제24조의2, 영 제20조)

- ▶ 안전행정부장관은 온천의 계획적 · 체계적인 보전 · 관리를 위하여 온천 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함
- ▶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자료 및 그 밖에 온천수 보전 ·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온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온천 관리 정보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관계공무원 출입검사 (법 제25조, 규칙 제18조)

- ▶ 시장 ·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 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온천수의 온도 · 성분 · 용출량 및 이용상황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
- ▶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 ■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법 제19조, 규칙 제12조)

- ▶ 온천종사자(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안전 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마다 시장·군수가 행하는 수질검사 및 특이성분(유황, 유리탄산)에 대한 성분검사를 받아야 함(별지 제9호서식)
  -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벌금
- ▶ 시장·군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
- ▶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의 결과와 온천의 온도, 금기증, 목욕용 또는 음용상의 주의사항을 온천이용시설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 ▶ 시장·군수는 수질 및 성분검사 결과 온천으로서의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검사 결과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음

### ※ 검사기관 · 검사주기 · 검사항목

구분	검사기관	검사주기	검사항목
수 질 검 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 보건환경 연구 원에 의뢰하여 행할 수 있으며, 온천 협회에 위탁 할 수 있음)	연 1회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주기전에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	인체에의 유해여부 (음용허가를 받은 경우 에는 음용적합여부를 포함) 기준 초과여부
성 분 검 사	온천전문검사기관 (시장·군수는 법 제27 조제1항에 따른 온천 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분)	매5년 1회이상(단 유황·유리 탄산 성분 연1회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주기전에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	1. 주요성분 2. 온도 3. 이용에 따른 효과 4. 이용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 정기자원조사시 성분검사를 동시에 수행

## ■ 정기온천자원조사 (법 제16조)

- 온천이용의 유효기간은 5년단위로 하며, 5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 24조에 따른 온천자원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거나, 허가량을 조정
- 유효기간 1개월 이전에 조사보고서 제출

## ■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법 제17조, 규칙 제11조)

- ▶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검사의 방법 그밖에 수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
  - 시장·군수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을 공중의 목욕용으로 허가하는 경우 그 수질기준과 검사방법에 대하여는 [별표3]을 적용

### ☞ 온천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규칙 제11조 관련 별표3)

- 원수 :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되, 총대장균군은 100ml중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함
- 욕조수 :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되, 1ml중에서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아야 함
  -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목욕장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욕수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온천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수질기준 적용을 받음

## ■ 온천의 공동급수 (법 제20조)

- ▶ 시장·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급수하게 할 수 있음
- ▶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기타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4. 수수료 및 벌칙 등

### 가. 처리기간 및 수수료 (법 제31조, 영 제15조)

#### ○ 수수료 납부방법

- 해당 시·군·구의 수입증지로 납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

민 원 명	처리기간	수 수 료	비 고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30일	없음	
온천발견신고	10일	없음	
토지굴착등(변경) 허가	5일	신규굴착 : 공당 6만원 증 굴 : 공당 3만원	
동력장치설치(변경) 허가	5일	설치 : 개소당 3만원 변경 : 개소당 1만5천원	
지하수개발 허가	5일	시·도조례에서 정한 금액	
수질·성분 검사	5일	시·도조례에서 정한 금액	수탁기관이 정한 수수료
온천이용허가	5일	건당 10만원	

## 나.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기준 (법 제5조제6항)

### ■ 처리기준

- 2차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법정판결 또는 심의 등에 의해 보고서상 허위내용이 확인된 경우 시장·군수는 반드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이 기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제7조제3항 제1호	등록취소	
2.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제7조제3항 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제7조제3항 제3호	등록취소	
4. 정당한 사유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지연하는 경우	법제7조제3항 제4호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5. 허위로 검사하거나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법제7조제3항 제4호	등록취소	
6.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7조제3항 제5호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 다. 벌 칙 (법 제32조~36조)

위 반 사 항	벌 칙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없이 토지를 굴착한 자</li> <li>- 법 제12조제4항의 온천굴착신고를 아니한 자</li> <li>-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천을 이용한 자</li> <li>- 보양온천 지정을 받지 않고 보양온천 표시를 한 경우</li> <li>- 허가를 받지 않고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 온천관련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 온천표시를 사용한 자</li> <li>- 허위로 온천발견신고를 한 자</li> </ul>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없이 동력장치를 설치한 자</li> <li>- 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 허가없이 지하수를 개발한 자</li> <li>-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한 자</li> </ul>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li> <li>- 온천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온천자원의 보전·관리 등에 관한 시장·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li> <li>-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의무를 위반한 자</li> </ul>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li> <li>* 온천원보호지구내 건설공사 등 토지굴착으로 온천수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때</li> </ul>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내지 제35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li> </ul>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	제36조

## 라. 과태료 (법 제37조)

### ■ 과태료 부과대상

위 반 사 항	벌 칙	비 고
온천이용업소에서 검사결과 및 주의사항 등의 게시 의무를 위반 한 때 (법 제19조제3항)		
시장·군수가 요구한 온천시설 관리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5조제1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7조
온천종사자교육을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법 제26조제1항)		

### ■ 과태료의 부과 · 징수

-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시장·군수가 정한 금액을 부과·징수

## 5. 온천전문검사 지침

### 가. 성분검사

▶ 온천수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분석하고 온천수의 수질 특성을 규명한다.

#### ■ 수소이온농도에 의한 분류

~ 3.0 미만	산성	3.0 ~ 6.0 미만	약산성
6.0 ~ 7.5 미만	중성	7.5 ~ 8.5 미만	약알칼리성
8.5 ~	알칼리성		

#### ■ 주요 이온성분에 의한 형의 구분

- 주요 이온성분(양이온성분 Na, Ca, Mg, K; 음이온성분 Cl, SO<sub>4</sub>, HCO<sub>3</sub>, CO<sub>3</sub>)을 meq/l 로 환산한 후, 양이온과 음이온성분 각각을 100%로 비교하여 25%이상인 성분으로 형을 표시한다. 이 때 25%이상인 성분이 두 개 이상일 때 가장 높은 값의 성분을 앞에 놓고 두 번째 성분은 괄호로 묶는다.  
예) Na(Ca)-HCO<sub>3</sub>(SO<sub>4</sub>) 형

#### ■ 광천온천의 분류

- 염화물광천온천 : 총고용물의 양이 1,000mg/l 이상이며, 형의 분류상 Na(Ca)-Cl 형인 경우를 염화물광천온천이라 한다.
- 황산염광천온천 : 총고용물의 양이 1,000mg/l 이상이며, 형의 분류상 Na(Ca)-SO<sub>4</sub> 형인 경우를 황산염광천온천이라 한다.
- 탄산염광천온천 : 총고용물의 양이 1,000mg/l 이상이며, 형의 분류상 Na(Ca)-CO<sub>3</sub> 형인 경우를 탄산염광천온천이라 한다.

## ■ 미량성분에 의한 분류

-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명칭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때 성분의 기원이 오염이 아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케이싱의 영향 등일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유황온천 : 총고용물량에 관계없이 total S-2 성분함량이 0.1mg/l 이상인 온천을 유황온천이라 한다(이 때 SO<sub>4</sub>+2성분은 황산이온성분으로 따로 표시한다). total S-2 성분함량은 S-2, HS-, H<sub>2</sub>S로 이루어지며, 대수층의 상태가 환원상태임을 의미한다.
  - 탄산온천 : 탄산가스(CO<sub>2</sub>) 성분을 250mg/l 이상 함유한 온천
  - 실리카온천 : 실리카(SiO<sub>2</sub>)성분의 함량이 40mg/l 이상인 온천
  - 철온천 : 철(Fe)성분의 함량이 10mg/l 이상인 온천
  - 구리온천 : 구리(Cu)성분의 함량이 1mg/l 이상인 온천

## 나. 온천전문검사 운영절차

### ■ 목적

- 온천법령에서 정한 온천전문검사 시행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특)한국온천협회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온천전문검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조사과정에서의 공신력을 확보함

### ■ 위탁의 대상

- 온천전문검사 : 온천부존조사, 온천공검사, 온천공영향조사, 온천자원평가조사, 정기온천자원조사, 성분검사 등
- 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및 수위변동실태 조사 등

### ■ 위탁운영 체계

- 온천전문검사가 필요한 시장·군수 또는 온천종사자 등이 온천협회에 위탁

- 위탁받은 온천협회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을 선정하여 온천전문검사 의뢰
- 의뢰받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온천협회와 약정한 검사 등을 실시하고 약정기일내 검사보고서 작성·제출
- 협회는 학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상이 없을시 위탁을 의뢰한 자에게 검사결과 통보

#### ☞ 온천협회 심의를 통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온천협회(학술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이상이 없을 시 보고서 제출문에 온천전문검사기관 및 온천협회의 직인을 병행 날인하고 학술위원회 검토서를 필히 첨부
- 한국온천협회장의 직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보고서에 대하여는 추후 문제발생시 안전행정부 및 온천협회가 책임을 지지 아니함
  - 공정성과 신뢰성 미흡

#### ■ 위탁계약 체결

- 안전행정부가 정한 온천전문검사의 종류별 품셈표를 적용하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9조(원가계산의 작성 등)에 의함

#### ■ 운영사항의 관리·감독

- 온천협회 및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온천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온천전문검사 위탁 운영사항의 전반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직접 관리·감독

#### ■ 온천전문검사 배분원칙

- 연간 계획된 온천전문검사의 총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온천전문검사 기관간 적정 배분 수행 원칙

- 온천전문검사기관별 검사 배분의 우선순위는 협의회에서 정한 순서로 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는 안전행정부 등록순서에 의함

####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종류별 우선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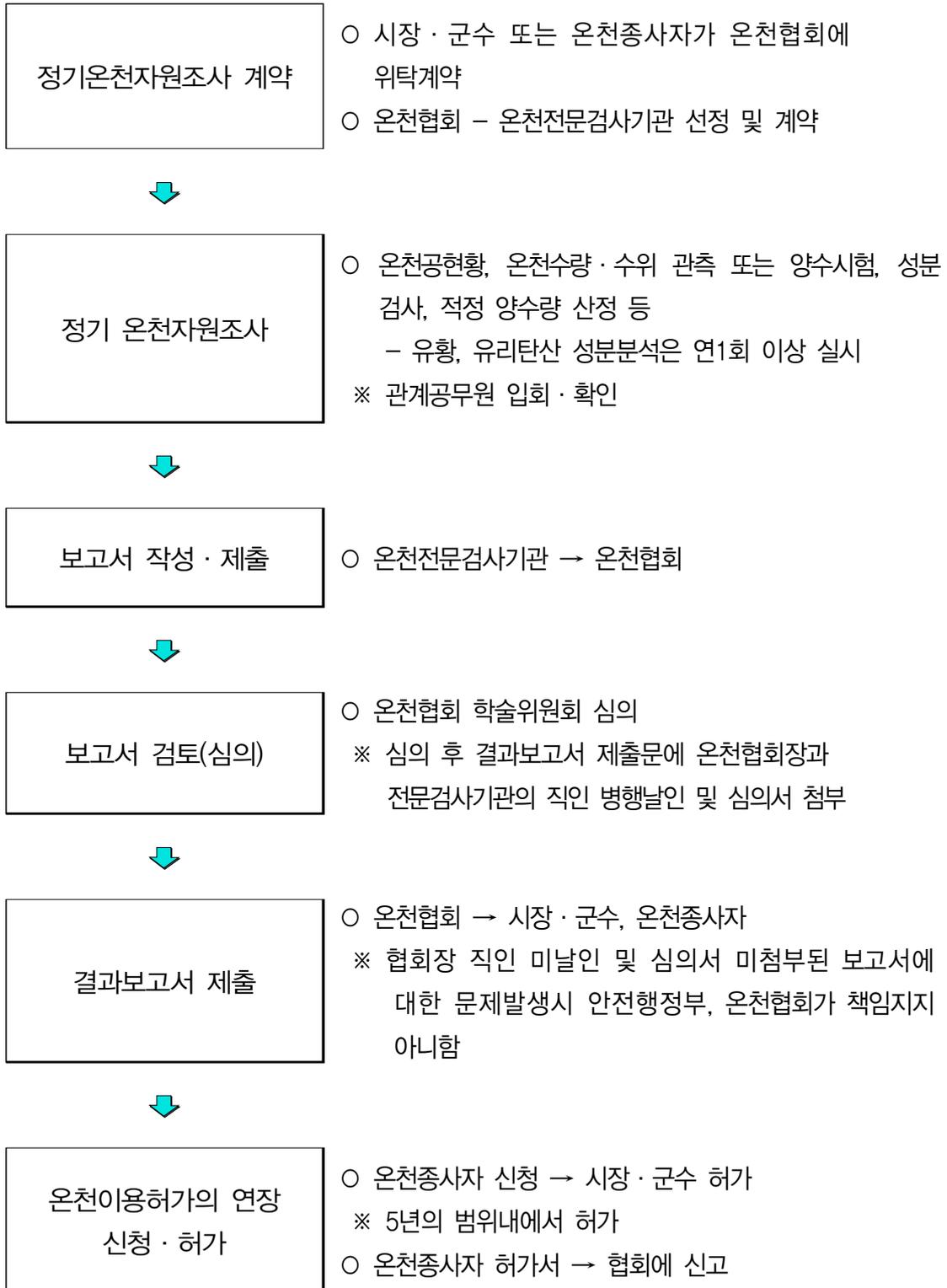
- 정기온천자원조사 : 예정순위의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하되, 동일년도의 인접지역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도록 조정
- 성분검사 : 당해 온천공에 대한 정기온천자원조사를 수행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수행

#### ■ 자료의 보존

- 온천전문검사보고서 및 각종 조사결과를 기재한 온천전문검사대장을 작성하여 10년 이상 보존
- 온천자원평가조사, 정기온천자원조사 등을 포함한 온천전문검사 결과는 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에 활용

## 다.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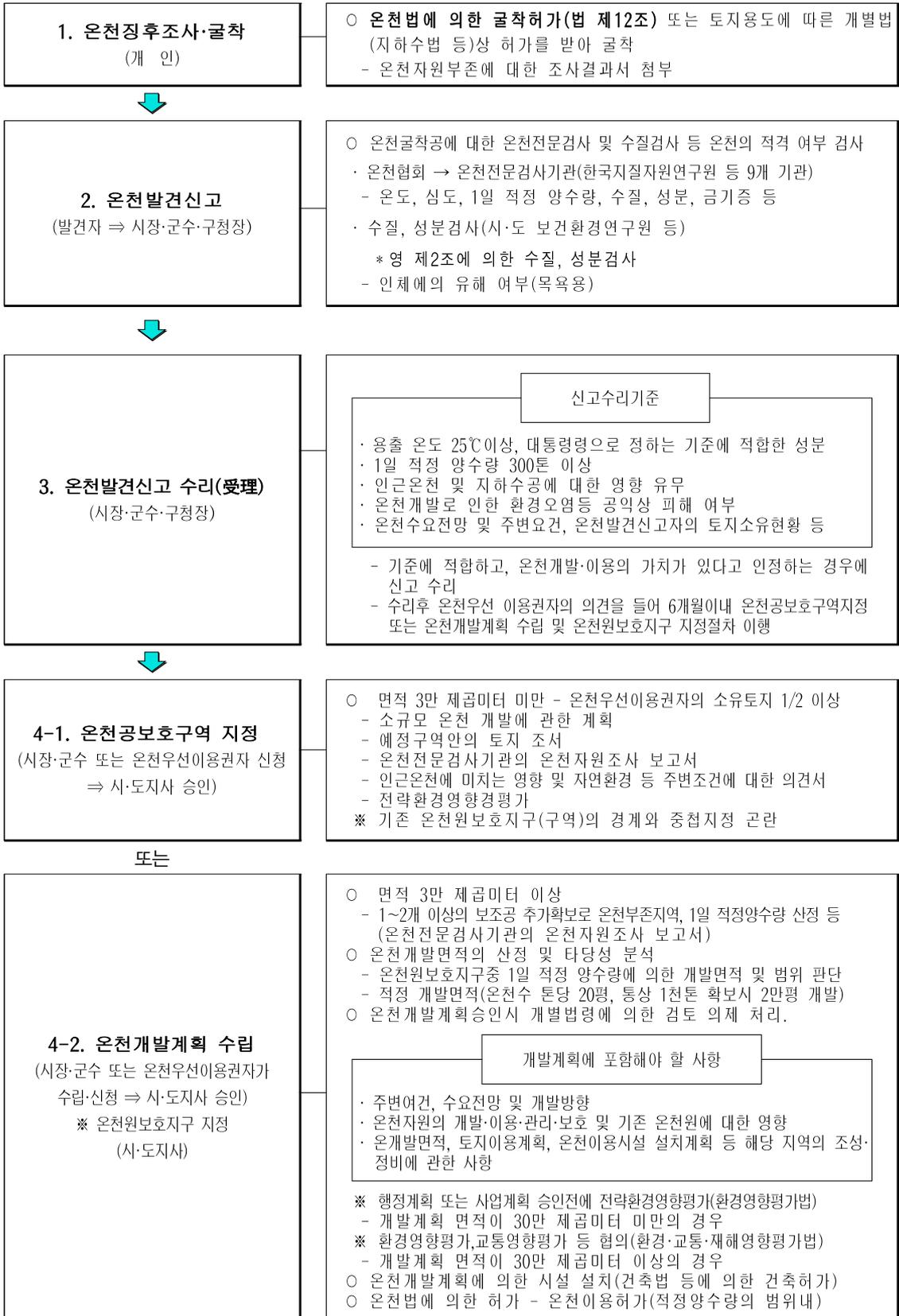
### ■ 온천전문조사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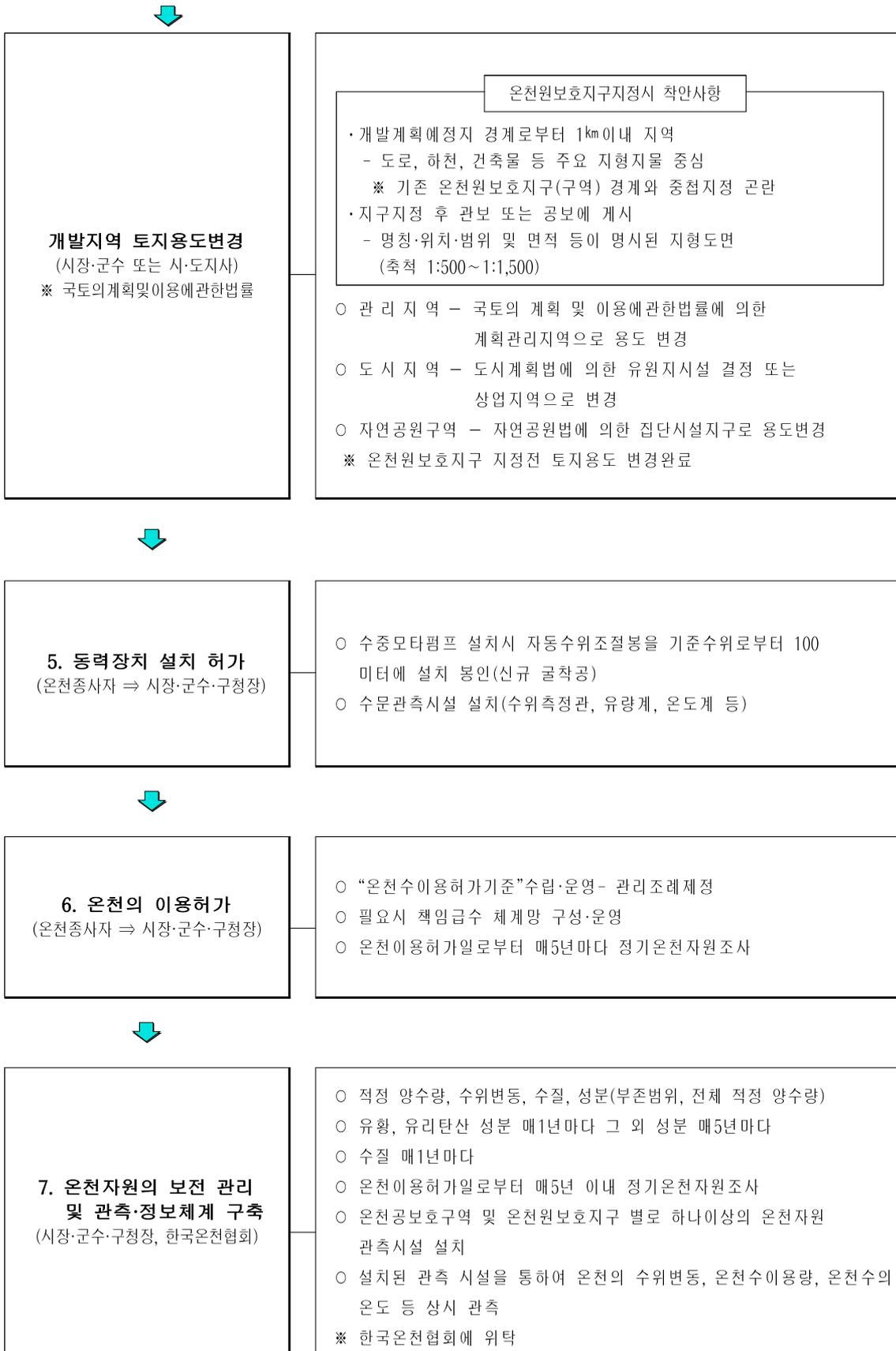


## [참고] 온천개발 · 이용 · 관리법규

<p><b>1. 온천징후조사·굴착</b> (개 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12조(굴착허가), 제15조(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제23조(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제30조(청문)</li> <li>영 제13조(굴착허가 신청), 제16조(지하수 개발 허가)</li> <li>규칙 제7조(굴착허가신청 등) - 별지 제3호 및 3호의2 서식, 제9조(지하수개발 허가신청) - 별지 제5호 서식</li> </ul>
<p><b>2. 온천발견신고(발견자 ⇒ 시장·군수·구청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 별지 제10호 서식</li> </ul>
<p><b>3. 온천발견신고 수리(受理)</b> (시장·군수·구청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22조(온천발견 신고 수리의 제한 등), 제23조(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li> <li>규칙 제13조(온천발견신고의 수리등), 제13조의2(온천발견신고의 반려)</li> </ul>
<p><b>4-1. 온천공보호구역 지정</b> (시장·군수 신청 ⇒ 시·도지사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6조(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제10조의3(전략환경영향평가 등)</li> <li>영 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 제4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li> <li>규칙 제2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제1호의2 서식, 제3조(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고시 등)</li> </ul>
또는	
<p><b>4-2. 온천개발계획 수립·승인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b> (시·도지사 승인·지정), <b>개발지역 토지용도변경</b>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제), 제10조의3(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제10조의4(개발사업의 시행), 제11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li> <li>영 제7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8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9조(개발계획의 변경), 제10조(개발계획의 승인 취소 요청), 제11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제12조(인·허가 등의 의제)</li> <li>규칙 제3조(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고시 등), 제5조(온천개발계획의 승인·변경신청) - 별지 제2호 서식, 제2호의2 서식, 제6조(온천개발기준의 산정기준) - 별표 1의3</li> </ul>
<p><b>5. 동력장치 설치 허가</b> (온천종사자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 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14조(동력장치설치의 허가)</li> <li>영 제15조(동력장치의 설치 및 허가 신청)</li> <li>규칙 제8조(동력장치의 설치허가신청) - 별지 제4호 서식, 제8조의2(수문관측시설)</li> </ul>
<p><b>6. 온천의 이용허가</b> (온천종사자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 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허가등 의제), 제17조(온천목적장의 수질기준 등), 제18조(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제20조(온천의 공동급수)</li> <li>영 제17조(온천의 이용허가)</li> <li>규칙 제10조(온천의 이용허가신청) - 별지 제6호 서식, 제10조의2(온천표시) - 별표 2, 제11조(온천의 수질기준 등) - 별표 3, 제12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등) - 별표 4, 별지 제9호 서식</li> </ul>
<p><b>7. 온천자원의 보전 관리 및 관측·정보체계 구축</b> (한국온천협회, 시장·군수·구청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제24조의2(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제25조(출입검사 등)</li> <li>영 제20조(온천자원의 관측)</li> <li>규칙 제15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 별지 제11호 서식, 제17조(허가증의 교부) - 별지 제12호 서식, 제18조(관계공무원 출입증표) - 별지 제13호 서식</li> </ul>

## [참고] 온천개발 · 이용 · 관리절차







## Ⅱ. 온천운영

1. 온천에 대한 이해
2. 온천 현황
3. 향후 온천의 내실화 방안
4. 온천의 의료적 효능 소개
5. 행정사항



## II . 온천운영

### 1. 온천에 대한 이해

#### 가. 온천의 정의

##### 〈온천법 제2조〉

- “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온천법시행령 제2조〉

- 다음 각 호의 성분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
  1. 질산성질소( $\text{NO}_3\text{-N}$ )는 10mg/L이하일 것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xt{C}_2\text{Cl}_4$ )은 0.01mg/L이하일 것
  3. 트리클로로에틸렌( $\text{C}_2\text{HCl}_3$ )은 0.03mg/L이하일 것

- 일반적 : 땅속에서 지표위에 평균 기온 이상의 물이 자연히 솟는 샘

※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 : 13℃(최근 10년 평균)

#### ▲ 세계 각국의 온천수의 온도 기준

- 대 만 : 30℃ 이상
- 일본, 남아프리카 : 25℃ 이상
- 미 국 : 21℃(70°F) 이상
- 독일, 이탈리아, 영국 : 20℃ 이상

## 나. 우리나라 온천의 유래

### ■ 온천에 대한 기록

- 고려사 - 고려 선종 때 병든 부모님께 온천욕을 시키고자 하는 관리에게 휴가제를 실시
- 경국대전 및 대전회통 - 온천이 있는 곳의 수령은 온천의 욕장을 수리하여 병인을 구호하여야 함
- 조선왕조실록 - 경기지방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현직자에게 3계급 특진하고 직위가 없는 자에게는 7등급에 임명하였고 천인은 입역을 면제하였다는 기록

### ▲ 세계 주요 국가들의 사례

국 별	온 천 이 용 사 례
독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26년 육군 광천(鑛泉)병원을 설립, 온천수 이용</li> <li>- 1870년 보불전쟁 때 율헤롬요원(療院)에서 부상장병 온천치료</li> <li>- 종합온천보양관인 쿠어하우스(kurhaus) 지정운영</li> </ul>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세계대전 이후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온천을 정부 직할에 두고 온천지 정비, 온천요법의 의학적 연구 진행</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56년 광천보호법 제정</li> <li>- 온천치료에 의료보험 적용 후 약물비 30% 감소</li> </ul>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에 시찰단 파견, 1923~25년 이주와 벳부에 온천요양소 설치</li> <li>- 1954년 보양온천제도 도입하여 현재 91개 보양온천지 운영</li> </ul>

※ 그 외 헝가리, 스페인, 스위스 등 여러 나라에서 온천법령을 제정하여 온천수를 보호하고 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2. 온천 현황

### 가. 기본현황 - '13년 12월말 기준

#### < 지구 및 인원 >

- 온천지구
  - 449개 지구(온천원보호지구 137, 온천공보호구역 194, 신고수리 118)
  - 이용중 : 211 지구, 개발중 : 238지구
- 온천이용업소
  - 557개 업소(지구 : 412, 구역 : 139, 신고수리 : 6)
  - 연간 이용인원 : 60,627천명(최다 - 충남 덕산온천 : 4,088천명)

#### < 평균 온도 및 심도 >

- 온천수 온도 : 최하 법정 25°C ~ 78°C(전국 평균 30.3°C)
- 굴착 심도 : 최저 70m ~ 최고 2,003m(전국 평균 705m)

### 나. 우리나라 온천의 이용환경

#### ■ 여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용객 증감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연간 총 22일을 관광주간으로 선정하여 초중고 재량휴업을 유도하면서 휴가분산을 통한 국내관광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국민관광여건 개선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관광 및 웰빙 수요 증가에 편승하여 전반적으로 온천이용객수 증가 경향

※ ('97년)4,200만 → ('07년)5,300만 → ('09년)5,400만 → ('10년)5,600만  
→ ('11년)5,700만 → ('12년)5,900만 → ('13년)6,063만

- 온천대축제 행사 개최 등 온천산업 활성화 추진 영향
- 기존의 전통온천지, 소규모 온천들은 시설 노후화, 영세화로 이용객 수 점차 감소

[참고] 전국온천현황

(2013. 12. 31. 기준)

시·도	계 <이용 업소>	신고 수리 <이용 업소>	보호지구지정			보호구역지정			개발 계획 수립 <지구>	연간 이용 인원 <천명>	지정면적	
			계 <이용 업소>	이용중 <이용 업소>	개발 중	계 <이용 업소>	이용중 <이용 업소>	개발중			보호지구 <단위 : 천㎡>	보호구역 <단위 : 천㎡>
합계	449 (557)	118 (6)	137 (412)	70 (408)	67 (4)	194 (139)	141 (138)	53 (1)	101	60,627	182,245	2,476
서울	10 (8)	2 0	1 (1)	1 (1)	0 0	7 (7)	7 (7)	0 0	0	1,787	150	61
부산	35 (78)	0 0	3 (53)	2 (53)	1 0	32 (25)	25 (25)	7 0	3	7,292	2,967	270
대구	13 (10)	1 0	3 (2)	2 (2)	1 0	9 (8)	8 (8)	1 0	2	2,303	1,785	63
인천	15 0	6 0	4 0	0 0	4 0	5 0	0 0	5 0	0	0	4,655	93
광주	3 (2)	0 0	2 (1)	1 (1)	1 0	1 (1)	1 (1)	0 0	1	245	950	2
대전	3 (67)	0 0	1 (66)	1 (66)	0 0	2 (1)	1 (1)	1 0	0	2,415	939	8
울산	12 (11)	2 0	4 (6)	4 (6)	0 0	6 (5)	6 (5)	0 0	3	1,285	3,818	87
세종	2 (2)	1 0	0 0	0 0	0 0	1 (2)	1 (2)	0 0	0	169	0	23
경기	50 (24)	11 (2)	18 (8)	6 (6)	12 (2)	21 (14)	14 (14)	7 0	11	4,022	21,836	350
강원	55 (33)	17 (2)	14 (18)	8 (18)	6 0	24 (13)	13 (13)	11 0	9	3,554	17,278	412
충북	20 (39)	5 0	11 (36)	4 (36)	7 0	4 (3)	3 (3)	1 0	7	2,020	19,635	25
충남	28 (83)	13 0	12 (81)	9 (81)	3 0	3 (2)	2 (2)	1 0	9	12,978	11,936	79
전북	28 (8)	10	12 (5)	3 (3)	9 (2)	6 (3)	3 (3)	3 0	8	1,042	21,757	54
전남	13 (44)	2 0	8 (42)	5 (42)	3 0	3 (2)	2 (2)	1 0	8	1,829	6,411	113
경북	96 (87)	22 (2)	31 (49)	18 (49)	13 0	43 (36)	37 (35)	6 (1)	27	11,161	50,748	428
경남	52 (58)	19 0	10 (43)	5 (43)	5 0	23 (15)	16 (15)	7 0	12	7,921	12,879	318
제주	14 (3)	7 0	3 (1)	1 (1)	2 0	4 (2)	2 (2)	2 0	1	604	4,501	90

## ■ 온천시설의 현대화에 따른 여건변화

- 물놀이 시설,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유원시설 형태의 다양한 기능을 갖춘 대규모 엔터테인먼트 시설의 등장으로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간의 양극화
- 찜질방·워터파크 등 경쟁업종의 대량출현과 일반 목욕탕의 시설 현대화로 차별화된 시설·서비스 공급체제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존 온천업소의 폐업실태 증가

## ■ 무분별한 온천 난개발

- 지가 상승을 기대한 무분별한 토지굴착후 자금부족, 타법상 규제 등에 의한 장기방치로 지하수 오염 및 국토난개발 초래
- 일부 지자체 및 사업가의 개발의지 부족으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온천지로서의 특성과 정취를 살린 종합적 관광여건 조성에 한계

## 다. 온천에 대한 국민 인식

- 이용목적 → 휴식 및 목욕
- 온천결정 고려요인 → 고령층은 보양, 저령층은 휴양(시설, 교통)위주
- 효능 인식 → 성분별 효능을 의학적으로 검증, 온천별 함유성분을 홍보
- 일반목욕 대비 온천 매력포인트 → 성분과 온도
- 온천시설과 일반목욕시설 구분 방법 → 간판, 상호 모호
- 온천만이 사용할 수 있는 로고의 적극 홍보
- 온천시설 투자시 구비시설 순서 → 노천탕, 찜질, 치료, 물놀이

## 라. 주요 개선사항

### ■ 온천수요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및 홍보추진

- 국가, 지자체의 온천산업 활성화 책무이행(온천법 제3조, 제3조의2, 제9조, 제9조의2)
-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최 : 안행부, 지자체, 국민일보, 관광공사, 협회, 학회 공동 협력식
- 온천이용 홍보 추진
  - 아름다운 온천책자 발간, 온천 홍보포스터 제작·배부, 일간지 광고 게재
- 의료적 효능 연구 : 보양온천 도입, 온천의 의료적 효능연구, 온천의 우수성 보고서

### ■ 온천자원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 국민보양온천 제도 도입·운영 - 온천법시행규칙 개정('08.3.24)
- 온천발견신고 제한 : 직선거리 1,000m
- 동일 온천원에서의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제한
- 온천법 개정(시행 - '10.8.5) 주요내용

- **온천법** : 온천개발절차 통합·일원화 및 개별법령 인·허가 의제처리, 온천개발절차 간소화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방안 규정, 온천자원의 효율적 관리·보전을 위한 관측·정보체계 구축, 온천협회에 온천전문검사 위탁 등
- **시행령** : 온천공보호구역 범위축소(4만㎡ ⇒ 3만㎡), 온천개발절차 간소화에 따른 관련기준, 절차 등 보완, 굴착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 요건 및 절차 마련, 온천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산업·공중시설 범위 신설 등
- **시행규칙** : 온천공 보호구역·온천원보호지구의 고시절차 규정, 온천수 특정성분의 검사주기 조정, 온천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등

## ■ 온천산업 경쟁력 강화 - 온천발전전략과제 연구 추진

- 온천수 음용화 방안, 온천치료 건강보험제도 도입방안, 온천수 열에너지 활용방안, 온천도시 조성방안 등

## 마. 온천자원관측시스템

### ■ 설치목적

- 국가자원인 온천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인력으로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관측장비에 의한 실시간 확인 후 자동화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온천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

### ■ 기대효과

- 전국의 온천자원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구축하여 온천자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안정적 이용 및 보전
- 온천 이용객에게 온천정보 제공
- 향후 녹색성장에너지인 “지열” 연구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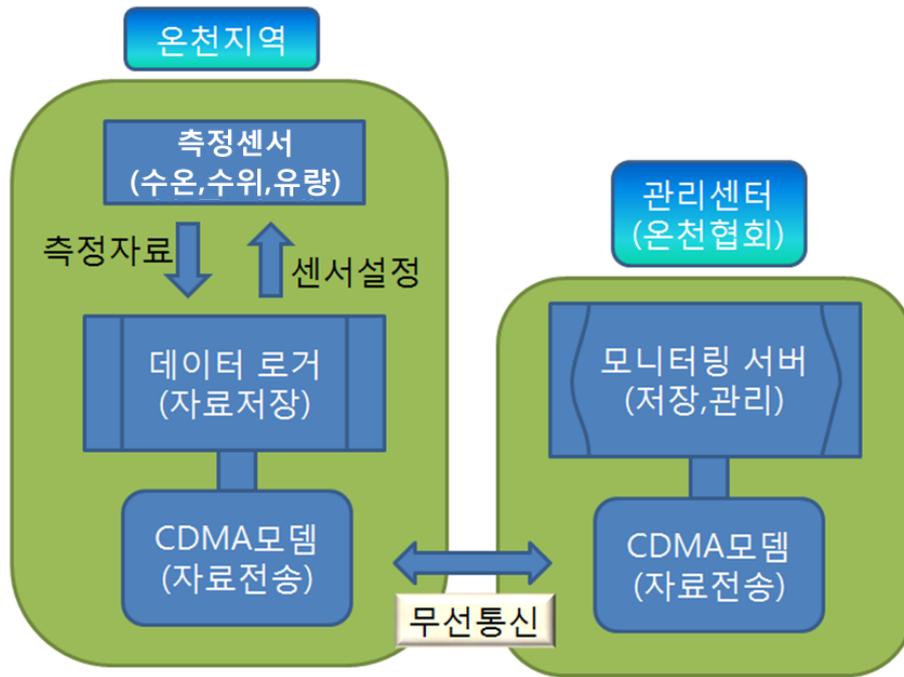
### ■ 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관리

- 관측 센서의 이원화 실시
  - 2012년까지는 온천공의 수문관측시설인 수위측정관을 이용해 ‘수위 및 수온’ 을 측정하였으나, 2013년부터 수위측정관으로 센서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전자식 유량계’ 를 설치하여 ‘유량 및 수온’ 을 측정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구축
- 온천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 체계 구축
  - 정보 수집과 정보 내용을 분석한 후 데이터베이스 구축
- 측정 데이터 수집 및 관리
  - 측정 데이터는 휴대전화 방식으로 전송하여 인터넷으로 자료 수집, 해석
  - 시스템 운영결과 및 결과를 이용자에게 제공(예정)

- 과잉양수, 성분의 변화소멸 등 발생시 온천종사자와 함께 기술적인 해결시도

○ 인력 및 측정장비의 운영

-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학술위원회)에 의한 운영
- 측정장비 설치 및 관리는 관련 업체에 위탁



온천자원 관측시스템의 개념도

■ 관측시스템 설치현황 (2013년말 현재)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655백만원을 지원, 28개 온천공에 관측시스템 설치
- 각 지자체의 '온천발전 종합계획' 에 의거 설치지역 선정
- 온천 이용객수와 지역 안배를 고려
- 설치지역

지역	2011년	2012년	2013년	합 계
개소	3	10	15	28

### 3. 향후 온천운영의 내실화 방안

#### 가. 온천산업의 활성화

##### ■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통한 온천산업 활성화 계기 마련

- 2007년 이후 매년 정례적 개최로 범 국민적 온천이용 “붐” 조성
- 온천요금할인, 온천체험, 가요제, 온천발전세미나 개최 및 지역축제와 연계,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울진	속초	동래	충주	부곡	유성	아산

※ 2014년(제8회)에는 예산군에서 개최(10월 예정)

##### ■ 보양온천 제도의 조기정착

- 온도·성분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에 대해 보양온천 지정
-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온천치료의 의학적 효과를 규명

##### < 보양온천 지정기준 >

- 온천수 기준 : 온도 35°C이상 또는 탄산천·유황천·총고용물 함유  
 ※ 전국 온천 449개 지구중 125개 지구 해당(27.8%) ('13. 12월 기준)
- 내부시설 기준 : 응급조치실·운동욕장 등 온천을 통한 치료·요양이 가능한 시설
- 주변환경 기준 : 공기청정도, 소음도, 경관 등
- 정책적 기준 :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정도

- 지정기준 개선 - 기존 시설기준 외에 지구 또는 구역단위 지정기준 마련
  - 현재 보양온천 지정기준은 온천수(온도, 성분, 수량), 보양온천시설(건강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보양온천 환경 기준(필수사항, 권장사항) 등 3가지임
  - 보양온천 지정 : 설악워터피아(속초), 파라다이스스파도고(아산), 덕구(울진), 덕산스파캐슬(예산), 동해보양온천컨벤션호텔(동해), 중원(충주), 비오매드(회순), 삼매봉(제주)

## ■ 온천 건강보험제도 도입

- 저렴한 비용으로 보양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도입
  - ※ 프랑스(약물사용비 3~40%감소), 일본(온천요양시 의료비 공제)
  - 도입방안 공론화를 위한 세미나, 공청회, 설명회 개최 추진
  - 온천수로 보험적용 가능한 항목(수치료)에 시범적 적용추진
  - 온천전문의 제도도입 검토

## ■ 온천수 음용화 제도 도입

- 지하수의 음용기준은 먹는물관리법령에 근거, 온천수는 특성상 다양한 성분으로 인해 음용화는 곤란
  - 온천수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없으나 광물성분이 함유되어 먹는물 기준중 심미적 기준(색도, 탁도, 경도 등)에 불부합
  - ※ 광물질이 함유된 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07.8)으로 별도 수질기준 마련
- 온천수 치료효과 검증후 건강 치료용으로 제한적 음용(환경부)
- 먹는물 기준을 충족하되 심미적 기준 배제 방안 먹는물관리법 개정 또는 별도의 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 해외사례

- 프랑스 에비앙(EVIAN)수
  - 탄산화합물·칼슘·마그네슘 등 함유, 신장병과 비뇨기 질환에 효능이 있고 일정량 음용시 이뇨효과
- 벨기에 스파(SPA)
  - 광천을 의미, 성분은 함철 탄산 냉천으로 국가가 관리
- 일본 아리마(有馬)
  - 낮은 온도 탄산천, 위장병에 좋고 천연탄산수로 사이다 제조

## ■ 온천수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수익 창출

- 고온의 온천수 열에너지를 이용한 난방시스템 설치 보급
  - 고온 온천수 자원은 신재생에너지(지열에너지) 설치비 지원방안 강구
  - 에너지효율 장려금 적용 추진
- 부곡온천 및 동래온천 등 계획예정

## ■ 온천수 이용 화장품, 비누, 의약품 등 개발

- 전북 순창군 - 나노버블(온천수 혼합음료) 생산·시판 중
- 충남 아산시 - 화장품, 미스트, 마스크 팩, 입욕제 등 온천수 시제품 개발·판매
- 강릉시 금진온천 - 메이스초이스(스킨, 로션, 미스트, 샴푸, 비누 등 화장품), 미네랄 워터(수출)

## ■ 온천도시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온천수음용 및 관리도모

- 온천도시 육성 방안 및 대상지 지정·선정 기준 마련
  - ※ 안전행정부에서 온천도시 지정기준 마련을 위한 온천법시행령 개정 추진 중

## ■ 온천산업에 대한 세제부담 완화

- 조세부담 : 관광단지 수준으로 완화
  - 취득세·등록세·농지개발부담금 50% 감면, 전기료, 하수도세 인하, 지역개발세 경감

## ■ 해외 우수온천 벤치마킹 실시

- 온천상품이 활성화 되어있는 가까운 일본 등 온천 우수선진국에 대하여 안전행정부 자체 또는 협회 지자체 등과 연계한 벤치마킹 추진

## ■ 신규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고 온천서비스 및 시설 수준 향상을 위한 발전과제를 발굴 육성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
- 온천업무 추진관련 관계부처에서 수용되지 않는 과제에 대하여는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협의

## 나. 온천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역할 정립

### ■ 온천협회의 역할

- 온천시설에 관한 자료 구축 등 전문성 강화
  - 관측시스템의 조기 설치 등 온천에 관한 정보구축을 바탕으로 전국의 온천 시설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강화 및 네트워크 중심축 역할 수행
  - 전국 온천시설의 정보제공 및 영세한 온천시설에 대한 자문역할 수행
- 서비스 매뉴얼 개발 및 지속적 업그레이드
  - 온천시설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 변화하는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
  - 시설, 계절별 특성을 살린 융통성 있는 서비스매뉴얼 지침 개발·배포 필요
- 온천종사자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다양화
  - 온천에서의 서비스 중요성, 온천종사자 및 온천이용시설 종업원의 역할과 태도 등을 포함
  - 기본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선진국 사례 소개 등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 ■ 온천종사자의 역할

- 정기적 평가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서비스 개선
  - 고객의견 카드 작성, 고객 만족도 조사 등 고객이 온천시설 방문을 통해 어떤 기대를 갖게 되었는지 파악
  - 고객의 공통적·개별적 요구를 구별함으로써 다양한 고객특성 파악을 통한 서비스 개선

○ 현실적인 목표설정과 고객서비스 개선 전략 수립

- 온천시설별 서비스 역량과 방문고객 특성 등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온천시설과 차별화된 전략 수립 필요
- 고객이 기대하는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감동을 유도하고 직원들이 그 의미를 공유하여 즐겁게 실천하도록 유도
- 업데이트된 온천시설 정보 제공 등으로 고객들의 재방문 유도

○ 직원 우대를 통한 고객 서비스 인프라 구축

- 직원들을 존중하는 문화와 업무환경 조성 등으로 직원감동을 통한 고객 서비스 문화 정착 유도
- 친절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직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게공간 마련 등 근무 만족도 향상
- 서비스 중요성과 그 서비스를 지원하는 직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서비스 정신을 갖춘 직원들의 다량 선발 확충

## 4. 온천의 의료적 효능 소개

- 이 자료는 『신온천의학』(일본 '온천기후물리학회'에서 발간한 온천의 의료적 효과에 관한 저서)에서 발췌한 자료로서
- 우리나라 온천의 의료적 효능을 규명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국민들이 온천의 의료적 효능을 신뢰하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온천 종사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요약 정리하였음

### 가. 온천요법의 작용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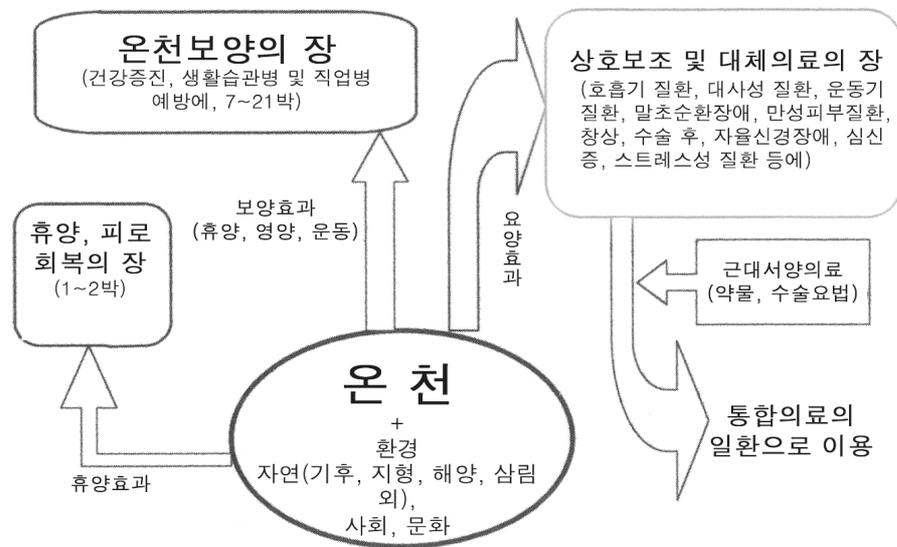
#### ■ 약물·수술요법과 온천요법 원리

- 온천요법과 약물수술요법은 작용원리가 근본적으로 상이
- 약물수술요법은 병의 원인제거
  - 약물수술요법은 질병과 장애의 원인이 되는 곳에 직접 힘을 가해 이를 제거하는 병의 원인제거를 지향한 치료법임
  - 급성감염에 항생물질을 투여하여 병원균에 작용시키거나, 종양을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것과 같이 질병과 장애의 원인과 병의 근원부분을 제거함
- 온천요법이 필요한 경우
  - 만성질환과 고도로 공업화된 문명사회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병, 기능조절장애에 의한 병적 상태에 대한 치료
  - 건강한 사람에게 있어서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체력을 증가시켜 질병 예방을 목표로 하는 경우

#### ■ 온천요법에 의한 치료원리

- 온천요법은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의 치유력 혹은 방어능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자하는 치료
  - 온천요법은 약물수술요법과 다르며, 몸의 내부로부터 작용하여 치유력을 증강시키고자 함

- 온천요법은 온천욕과 운동, 기후요소를 포함하여 치료체재를 몸 전체에 작용시켜, 그 방어능력을 이용하는 자연치료임
- 이와 같은 자극에 적응하여 가는 과정에서 몸의 기능은 훈련을 받아 향상되며, 생체 방어능력이 강화됨
- 병적기능은 정상화되고 건강한 기능은 더욱 증강하게 됨
- 간접적 효과를 기대하여 자극도 거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것, 예를 들면 입욕, 운동, 자연·기후환경요소 등을 자극수단으로서 이용하고자 하는 것
- 물론 현재에는 이와 같은 자연요법 효과에 한계가 있는 것도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약물과 수술에 의한 치료도 병행해야 함



온천지의 이용형태

## 나. 온천요법 종류

### ■ 질병·장애에 대한 온천요법 효과

- 만성질환에 대해
  - 생체의 반응성과 방어능력 개선, 장애기능의 개선과 건강한 기능의 강화
  - 약제 등의 기초치료를 최소화시키거나 중지시킴

- 재활의학에서는
  - 운동 등으로 생체의 적응증력을 높여주며, 정신적 적응능력을 증가시킴
  - 가정과 직장 등의 사회적 스트레스로부터 해방
- 예방의학적으로는
  - 성인병과 스트레스성 질환의 예방과 위험인자를 제거
  - 건강의 유지와 증진, 체력증진 및 질환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 ■ 온천요법 특색

- 자연요법으로 방어능력 증강
  - 불안정하거나 병적 상태에 있거나 혹은 불활성화된 몸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정상상태로 회복시킴
  - 이는 안정이나 순환촉진, 산소의 공급 등에의 정상상태로 돌아오는 과정을 증강시키는 것과 같은 경우임
  - 여러 가지 치료제재에 의해 주로 자율신경계가 자극되고, 이 자율신경계를 매개로 하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능력이 개선되어 병적 기능이 정상화됨
  - 운동과 같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기능 훈련을 하여, 신체 내외의 이상환경에 대한 전신의 방어능력을 증강함
- 온천요법과 약물·수술요법의 보완작용
  - 온천요법은 약물·수술요법과는 그 작용원리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온천요법은 그 적응력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에 보완함
  - 온천요법은 약물수술요법의 전후와 혹은 동시에 행해짐
  - 온천요법의 목적은 만성질환과 재활의학에서 병적기능의 조정, 생체방어능력의 강화 등이 있지만, 앞으로 더 중요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건강한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의학적인 면에서 건강유지, 체력유지, 심신의 건전함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임
  - 온천요법은 급성진행성의 병상에는 적응이 없는 대신 발병예방, 만성병의

회복이나 회복촉진, 사회생활 재적응 조장, 건강유지에 효과가 있고 발달되어 가는 근대의료의 결함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대기나 물의 오염이 심해지고 소음과 인공조명으로 주야의 리듬이 흐트러지고, 사회나 가정에서의 심신의 스트레스가 많은 도시인 스스로 각종 약재의 남용으로 인한 약해나 가공식품, 과보호, 운동부족 등으로 하늘로부터 받은 방위능력을 잃은 사람들을 보호, 재훈련하여 자연 리듬을 회복시키는데 온천을 활용하고 있는 현대 서양의료의 보조 대체의료수단임.

## ■ 온천의 의학적 효능

- 온천수의 천온 및 함유성분
  - 온의학적 이용에서 중요한 요소가 천온(온천수의 온도)과 화학적으로는 함유성분이 의학적인 효력을 전제로 일반 지하수와 그 성질을 달리하는 천연의 특수한 물이 지중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는 현상의 물이라 함.
- 온천지 보양·요양
  - 각 온천지의 입지와 연결된 치료수단을 포함 기후요법, 물리요법(물치료법), 온천요법, 운동요법, 식사요법과 약리요법-심리적 요법 등 다양함.
- 물 치료법의 역사
  - 히포크라테스(전 470년), 아리스토텔레스(전 384 ~ 322년)등은 물을 약으로 이용하였으며, 물은 질병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음

## 다. 온천의 작용원리 및 효과

- 온천수에는 용출량, 천온, 화학성분의 세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함
  - 천온과 화학성분은 그중 어느 것이든 보통의 물에 비하여 특이한 것이어야 하고, 용출량은 아무리 고온, 고농도의 물이라 해도 계속해서 채취(양수) 할 수 없다면 온천이라고 할 수 없음
- 온천의 인체에 대한 영향은 물리적, 온열적, 화학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됨

## ■ 물리적 작용

### ① 부력

- 수중에 신체를 담그면 체중은 공기중보다 1/9정도로 가벼워진다. 목욕 중에는 수압에 저항하여 순환기계, 근육골격계가 단련되고, 부력에 의해 체중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욕중운동이 쉬워짐. 이런 특성을 이용하여 신경장해나 근력이 약한 운동장애자에게 재활의학의 영역으로 이용함.

### ② 정수압

- 수중에서는 수심이 1m증가하면 76mmHg만큼 수압이 신체의 표면에 가해짐. 수심이 1.3m가 되면 허반신에 80~100mmHg의 압력이 가해짐.
- 정수압은 심·순환계에 강한 영향을 줌. 전신욕에 의해 혈관과 림프관은 수압에 의해 압축되어지고, 혈액 및 림프액은 순환이 빨라지게 됨.
- 심부전의 환자에 대하여 반신욕을 권하는 이유도 정수압의 영향을 적게 하고 심장에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

### ③ 욕수온도와 체온조절 에너지 소비

- 목욕 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수온이 불감온도로서 35~36℃ 전후이며, 여러 가지 생리기능의 변화가 아주 적음. 입욕은 욕수온도에 따라 냉수욕(24℃이하), 저온욕(24~34℃), 불감온도(34~37℃), 미온욕(37~39℃), 온욕(39~42℃)과 고온욕(42℃이상)으로 구별함.
- 체온은 환경조건의 변화에 열생산과 열방출의 2가지 조절기능 균형으로 항상성이 유지됨.
- 전신수욕의 경우 42℃의 고온욕을 10분간 행하면, 약 120Kcal 소비하고, 25℃의 수중에 20분 있으며 약 100Kcal의 소비되므로 당뇨병환이나 비만의 경우 열량소비를 도와줌.

### ④ 온수욕과 심·순환기능

- 온수온도가 심장 및 순환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큼. 욕수온도가 38℃ 이상이 되면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장의 박동수, 심장 박동의 출력, 1회 박출량 등이 증가함.
- 고온욕은 급격한 혈압상승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고령자와 고혈압증, 동맥경화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적당하지 않음.

## ■ 함유성분의 화학적 작용

### ○ 함유성분에 의한 효과

- 온천중의 가스나 이온 등이 체내에 흡수되어 나타나는 효과임. 온천의 성분이 피부로부터 혈액에 들어가 전신으로 흩어져 피부, 피하조직, 근육 등의 세포에 작용함과 동시에 신경계에도 작용하게 됨.

### ○ 변조효과

- 체내에 흡수된 온천성분의 자극에 의해서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작용이라고 설명될 수 있으며, 온천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기간 온천지에 체제하여 연일 온천입욕과 음천을 반복함으로써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되어있음

### ○ 화학작용

- 온천수의 경우는 그 안에 함유된 성분(이온, 가스체)의 농도에 관계없이 그들이 피부에 부착, 흡수되어 피부말단에서는 활발한 화학작용이 운용될 수 있음. 보통의 담수욕에서는 성분은 제로이기 때문에, 이들의 작용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임.
- 피하나 점막내에 혈관을 확장시키는 아세틸콜린, 혈관을 수축시키는 아드레날린상의 물질 또한 아데닐산, 히스타민 등의 자율신경작용물질이 만들어져서 혈관, 림프관을 통해 뇌의 자율신경중추에 전달되고, 병적으로 자율신경 실조로 되어 있는 상태를 정상화시킴.

### ○ 소요기간

- 이상의 작용은 하루에 걸쳐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2~4주의 요양기간을 필요로 함.

[표] 입욕제의 피부에 대한 효과와 유효성분

약초, 허브	기대되는 효과와 적응	주(注)
<p>한방</p> <p>당귀 진피 천궁 오동나무 생강 홍화 황백나무 고추 산치자 황금 회향</p>	<p>빈혈, 냉증, 생리불순, 갱년기 장애 식욕부진, 구역질, 기침, 발한작용 빈혈, 냉증, 생리불순, 지용물의 피부침투 향기로 진정작용, 보습, 미백 몸을 따뜻하게 함, 감기예방 몸 보온, 혈행 촉진, 생리불순 등의 부인병 장내살균작용, 화상 건위작용, 피부 활력, 양모, 육모 해열, 지혈작용, 타박상, 소염, 여드름 혈압강하, 이뇨, 지혈, 해열 혈관확장, 건위, 거담</p>	<p>[當歸](뿌리) [陳皮](밀감껍질말린 것) [川芎](뿌리) [楝皮](과실껍질) [生薑](생강 뿌리) [紅花](홍화꽃) [黃柏](나무껍질) [蕃瀉](고추 열매) [山梔子](치자나무 열매) [黃芩](황금꽃 뿌리) [茴香](종자)</p>
<p>허브</p> <p>라벤더 로즈마리 카모마일 로즈 스위트펜넬 안젤리카 엘더 플라워 덴드라이언 세이보리 타임 페퍼민트</p>	<p>진정, 감기 강장, 혈액순환 촉진 냉증, 불면, 산부인과 관련 변비, 산부인과 관련 소화기계 기능 조정 산부인과 관련, 강장 감기(내복약과 입욕제) 간, 강장, 담낭의 기능 향진 강장, 피로회복 감기, 식욕부진, 구역질 등 소화기계 관련 식욕부진, 과식 등의 소화기관 관련</p>	
<p>그 외</p> <p>유칼립투스 창포 수양버들 쇠뜨기</p>	<p>가려움증/홍반의 개선, 아토피피부염 혈액순환 개선 혈액순환 개선, 항염증 효과 혈액순환 개선</p>	

(주) 효과에는 엄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도 포함되어 있음.

[표] 천질(泉質)별 적응증(適應症)(환경청 통지)

온천성질		목욕용	음료용
염류온천	염화물천(鹽化物泉)	창상, 화상, 만성피부병 허약아동, 만성부인병	만성소화기병, 만성변비
	탄산수소염천	창상, 화상, 만성피부병	만성소화기병, 당뇨병, 통풍, 간장병
	황산염천 철-황산염천 및 알루미늄- 황산염천 제외	동맥경화, 창상, 화상, 만성피부병	만성담낭염, 담석, 만성변비, 비만증, 당뇨병, 통풍
특수성질(특수성질)에 함유한 염류온천	이산화탄소천	고혈압증, 동맥경화증 창상, 화상	만성소화기병, 만성변비
	함철천	월경장애	빈혈
	동-철 함유천	철 함유 온천에 준한다	철 함유 온천에 준한다.
	유황천	만성피부병, 만성부인병 찰상, 당뇨병, (황화수소형) 고혈압증, 동맥경화증 그 외는 상기에 준한다	당뇨병, 통풍, 변비
	산성천	만성피부병	만성소화기병
	함(습)알루미늄온천	산성천에 준한다	산성천에 준한다.
	방사능천(放射能泉)	통풍, 동맥경화증, 고혈압증, 만성담낭염, 담석증, 만성피부병, 만성부인병	통풍, 만성소화기병, 만성담낭염, 담석증,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표] 천질(泉質)별 금기(禁忌)(환경청 통지)

온천성질		목욕용	음료용
염류온천	염화물천(鹽化物泉)		간장병, 고혈압증, 기타 일반 부종, 갑상선기능항진증일 때는 요오드를 함유한 온천을 금기한다
	탄산수소염천		나트륨-탄산수소염천은 염화물천(鹽化物泉)에 준한다
	황산염천 철-황산염천 및 알루미늄- 황산염천 제외		설사 시에, 나트륨-황산염천은 염화물천(鹽化物泉)에 준한다
특수성질(특수성질)에 함유한 염류온천	이산화탄소천		설사 시
	유황천	피부, 점막이 과민한 자, 특히 광선과민증인 자(유화수소형)고령자의 피부건조증	설사 시
	산성천	유황천에 준한다	

## 5. 행정사항

### 가. 온천종사자 교육제도

#### ■ 관련 법령·규정

##### ○ 온천법 제26조(온천종사자 교육)

- ① 온천종사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온천종사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교육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포함 시켜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의 위생교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온천법 시행령 제19조(온천종사자 교육)

-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연간 4시간으로 하며, 그 밖에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구분	계	온천법	온천운영	공중위생관리
시간	4시간	2시간	1시간	1시간

##### ○ 안행부고시 제2010-71호('10.10.29)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 14조(행정지원)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에서 온천종사자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강사 등과 관련하여 협회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 ■ 교육대상 및 교육불참자 조치

### ○ 교육대상 : 온천종사자(법 제2조제3호)

-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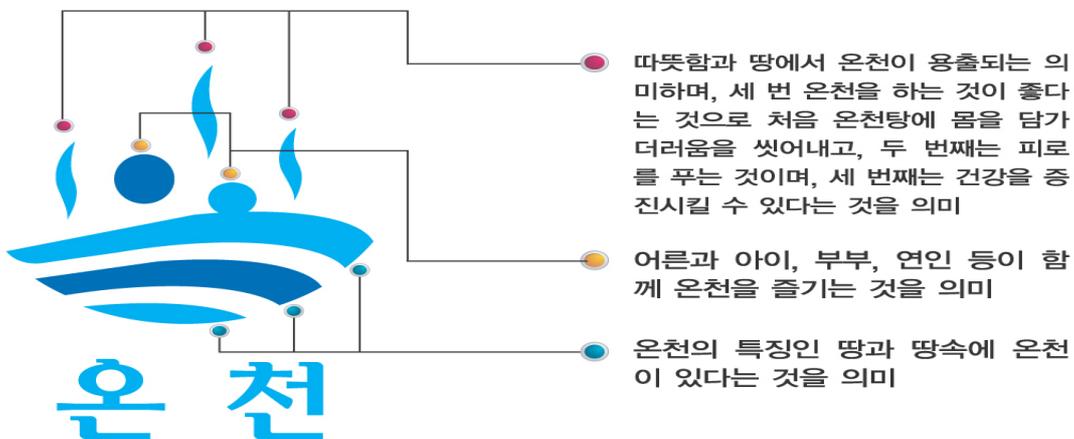
※ ‘관광진흥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관광숙박업 시설 또는 유원시설업, 골프장, 스키장 및 수영시설이나 공동급수대상자도 해당

### ○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7조 제1항제3호)

※ 과태료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

## 나. 새 온천로고의 부분별 의미



## 다. 온천관련 자료지원

- 온천과 관련된 각종 자료가 필요한 경우, 회원사에 한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원
- ‘붙임’ 자료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신청하면 협회가 자료를 확보하여 회원사에 제공



## Ⅲ. **공중위생관리**

1. **총론**
2. **공중위생영업 신고**
3. **공중위생업소 관리**
4.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 벌칙규정**



# III. 공중위생관리

## 1. 총론

### 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비전 : 공중위생 서비스 선진화 및 국민만족도 향상

■ 목표

- 공중위생영업의 위생수준 향상 및 경쟁력 제고로 미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 추진전략

- 사전지원적 규제합리화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 고용 및 산업 연관 효과 극대화
-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개요

-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개혁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기존의 공중위생법을 폐지하고 법률 제5839호(1999.2.8)로 공중위생관리법을 제정
- 그 주요내용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제를 개설통보제로 바꾸어 제도개선을 통한 규제완화를 실시하고, 행정공무원의 영업소 출입을 제한하며, 휴일제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폐지하여 영업자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그러나 시행결과 공중위생영업소에서의 각종 무질서와 음란행위가 증가하고 공중위생분야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개설통보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제도를 신설하는 등 양질의 공중위생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차례 개정됨

## 나. 「2014년도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지침」 주요개정 내용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개정사유
Chapter 2. 제1장 공중 위생관리 업무편람 (14p)	제1장 공중위생관리법 개요 I.공중위생관리법 개 요 ·공중위생관계법령 의 천내역 내용 일부 에 한해 수록	제1장 공중위생관리법 개요 I.공중위생관리법 개요 ·국 가 법 령 정 보 센 터 (www.law.go.kr)에서 공 중위생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그간 변천내 역을 모두 발췌하여 수 록	'14년 안내지침에는 법 령·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변천사를 모두 수 록함으로써 공중위생 관리법령의 전반적인 개정흐름이해 도모
Chapter 2. 제2장 공중 위생업소 및 공중이 용시설 관 리 (66p)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예감시원 활동 및 교육실적을 별지 제 9,10, 11호 서식에 의 거 분기 종료 후 15 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실효성 및 활용도가 낮은 의무 보고 내용 삭제로 일선 지자체 당공무원의 업무경감 도모
Chapter 2. 제7장 관련 고시 및 각종지침 (219p)	Ⅲ.공중위생영업자등에 대한 생교육 실시지침	Ⅲ.공중위생영업자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지침 개정 <주요 개정내용> · 제 12조(수강료 등 공개), 제16조 (교육만족도조사 등) 조 항 추가 · 기타 조항 보완 및 자구수정 등	<지침 개정> ·위생교 육비 집행내역 공개의 무화로 수강료의 투명 한 행 및 회원의 알 권리 도모 · 회원들의 위생교육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를 통해 향 후 위생교육 제도개선 을 위한 초자료로 활 용

## 다. 공중위생 선진화

###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 추진목적 :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향상 도모 및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공표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 평가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

## 라. 공중위생관계법령의 변천내역

### ■ 관련법령 제정(1962.1.1)

- 공중목욕장업법, 숙박업법, 유기장업법, 이용사 및 미용사법 등
- 상기 관련법령을 통합하여 공중위생법으로 제정

### ■ 변천내역

- 영업의 종류(법 제2조)
  - 위생접객업 : 숙박업, 목욕장업, 유기장업, 당구장업, 수영장업
- 영업의 세분(시행규칙 제3조)
  - 숙박업 : 호텔업, 콘도미니엄업, 여관업, 여인숙업
  - 목욕업
    - 일반목욕장업(공동탕업, 가족탕업, 한증막업)
    - 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 터키탕<증기탕>, 복합목욕탕)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1999.2.8.)

- 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및 위생교육 정례화(2002.8.26)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제 및 과징금제도 신설화
- 시·도지사로 하여금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2004.1.29)
-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의 목욕장업 편입(2005.3.31)
- 공중위생 책임자 지정을 통한 위생교육 실시(2006.9.27)
- 공중위생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전문기관이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2008.3.28)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2011.3.30.)

## 마. 불합리한 제도개선 추진

- 손씻기 생활화 교육·홍보 신설 (제1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손씻기 생활화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공중 위생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비스 제공 전·후로 손을 청결히 하도록 함.
- 위생관리기준 준수 의무와 영업자 위생교육 및 위생서비스평가의 연계 실시로 법령의 실효성 제고 (제15조 및 16조)
  - 위생관리 의무사항을 위생교육 내용 및 위생서비스평가의 필수 항목으로 규정하고, 위생관리의무 및 교육이수 의무위반자에게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부과함
- 처벌 규정 개선 (제21조, 제45조)
  - 경미한 위생관리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폐지하되, 성매매 알선 행위 등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
- 과세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제31조제3항)
  -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인적사항 및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를 문서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바. 공중위생영업 정의

### ■ 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예)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등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의 세분)

- 숙박업(일반)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제외)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생활)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 제외 대상시설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 ■ 목욕장업

- 손님이 물로 목욕을 하거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예) 공동목욕탕, 한증막, 사우나, 찜질방 등

- 목욕장업의 제외 대상시설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 숙박업 제외 대상시설에 부설된 욕실

## 2. 공중위생영업 신고

### 가. 영업의 신고

#### ■ 신고의 의미

-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영업의 신고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영업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고 관청에서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구비서류, 기타 법령 등에서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즉시 신고 수리함.(미신고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영업신고의 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아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 ■ 영업의 신고절차

- 신고관청 : 영업소 소재지 관할시·군·구
- 첨부서류 : 영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교육필증(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 ■ 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 ■ 영업의 신고수리 : 즉시

- 업종별 시설 및 설비기준 확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신고증 교부한 후 15일 이내)
- 업종별 시설 및 설비 기준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나. 변경신고

- 신고대상 변경사항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면적의 3분의 1 이상 증감,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숙박업·미용업의 세부 업종간의 변경
    - ※ 변경신고한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 등을 변경신고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 확인
- 제출서류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시행규칙 제5호서식), 영업신고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
- 변경신고 처리 : 즉시
  - ※ 신고증 교부 : 기존 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교부

## 다. 지위승계신고

- 지위승계신고 대상 : 승계후 1개월 이내
  - 영업 양도시 양수인, 영업자 사망시 상속인
  -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제출서류
  -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라. 폐업신고

- 신고기간 :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 제출서류 : 영업폐업신고서(시행규칙 제5호의2서식)

### 3. 공중위생업소 관리

#### 가. 공중위생관리 대상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적용대상
  - 공중위생영업(6종)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 공중이용시설.(6종) : 업무시설, 복합건축물, 공연장, 학원, 혼인예식장, 실내체육시설

#### 나. 보고 및 출입·검사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 권한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시기 :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해 필요한 보고요청
- 소속 공무원은 영업소·사무소, 공중이용시설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이행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검사 및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 열람 가능
- 상기 업무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소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함.
-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 후 업무를 행하여야 함(단, 보건위생관리상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다. 공중위생감시원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

##### ■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 공중위생영업 신고관련 시설 및 설비의 확인
-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인·검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

-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상태의 확인·검사
-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 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 이행여부의 확인

#### ■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화학, 화공학, 환경공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외국에서 위생사 환경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
- 3년 이상 공중위생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공중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중 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자 중 공중위생감시에 관한 교육훈련을 2주 이상 받은 자(공중위생행정 종사기간 동안에 한함)
- 공중위생감시원의 임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 소속공무원 중 해당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

### 라. 공중위생영업소 지도점검

#### ■ 지도단속업무의 고유사무 권한 및 임무

- 시·군·구: 공중위생영업소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무신고 영업소에 대한 확인
- 경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성매매행위알선등행위 처벌에관한 법률」, 「의료법」(안마사에관한규칙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 ■ 위생감시 준비사항

- 점검표 및 확인서(지침 별지 제2-1~2-4호 서식)

- 카메라 및 통신장비
- 공중위생관리법령집 및 관련 규정집, 공중위생감시원증
- 검체수거에 따른 수거증 및 수거에 따른 준비물 등

#### ■ 위생감시 대상 및 중점 점검내용

- 공통사항 : 업종별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 숙박업 : 숙박업소 청결 등
- 목욕업 : 밀실설치, 탈의실내 불법 감시카메라 설치 등 확인

### 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제15조의2, 영 제9조의2)

#### ■ 업무범위 및 임기

-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계몽
- 기타 공중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위촉권자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 명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다만, 소속 단체장 등의 요청에 의하여 위촉권자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함.

#### ■ 명예감시원 운영

-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시·도지사는 활동지역을 지정하여 시·군·구별로 명예감시원을 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활동지역과 시군구별 배정인원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 명예감시원을 배정받은 자치구에서는 명예감시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들로 하여금 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관련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명예감시원의 활동일수는 년30일 이내로 한다.

## 4.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 벌칙규정

### 가. 과징금 (법 제11조의2)

#### ■ 과징금 정의 및 부가·귀속

-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당해 위반사항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금전을 부담하게 하는 행정 제재금
-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고 당해 시·군·구에 귀속

#### ■ 과징금의 산정기준 (시행령 별표1)

- 영업정지 1월은 30일 기준
-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 나. 과태료처분 (법 제22조)

#### ■ 과태료

-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위반 행위(행정질서벌)에 대한 제재로서 일종의 금전벌
- 행정형벌은 행정목적에 직접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인데 반해 행정질서벌은 신고의무 등을 게을리한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애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 즉, 행정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 과태료부과 대상 및 금액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금액 (만원)
1. 법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22조제1항 제1호	30
2.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욕장의 욕수 중 원수의 수질기준을 위생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22조제1항 제1호의2	100
3.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욕장의 욕수 중 욕조수의 수질기준을 위생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22조제1항 제1호의2	70
4. 법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제22조제1항 제2호	50
5. 법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제22조제1항 제3호	50
6.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2조제1항 제4호	100
8. 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제22조제2항 제6호	20

## 다. 벌칙 규정 (법 제20조 및 제21조)

### ■ 벌칙

- 벌칙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지권에 의거 과하는 제재로서 행정청에서 사법당국에 고발 등에 의거 조치됨

### ■ 대상 및 형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신고영업(법 제3조 제1항)
  - 영업정지명령·일부시설의 사용중지명령·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시설을 사용하거나 영업한 자(법 제11조 제1항)
-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조 제1항 후단규정)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제3조의2)
  - 건전영업질서유지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제4조 제7항)
- 3백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관리기준 또는 오염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10조의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 또는 면허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 자

###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

[별지제2-1, 2호서식]

### 공중위생업종별 영업자 준수사항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동업 시행규칙 제7조

#### (숙박업)

준 수 사 항 (시행규칙 제7조관련, 개정 2012.12.11)

- 영업신고여부
- 영업변경신고여부

#### 가. 객실·침구 등의 청결

- (1)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예방및 관리에 관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소독 횟수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은 4월부터 9월까지는 1회이상/1월, 10월부터 3월까지는 1회이상/2월 소독하여야 한다.

- (2)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
- (3) 객실의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 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

욕조수는 별표 2의 I. 수질기준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다. 환기 및 조명

- (1)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룩스(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룩스(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서 1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라. 그 밖의 준수사항

- (1) 숙박업자는 업소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 (2) 숙박업(생활)의 취사시설은 「도시가스 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목욕업)

준수사항 (시행규칙 제7조관련, 개정 2012.12.11)

- 영업신고여부
- 영업변경신고여부

가. 목욕실 등의 청결

- (1) 목욕실은 해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 (2) 탈의실·옷장·목욕실·발한실·물통·궤반·휴게실·휴식실·현관 및 화장실 등은 매일 1회 이상, 배수시설 및 오수조는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 (3) 수건·가운 및 대여복을 손님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 (4) 이용기구 또는 미용기구를 비치할 경우에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5) 부대설비로 좌욕기 및 훈증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님 1인이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소독하여야 한다.
- (6) 욕수는 별표 2의 I. 욕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발한실 등의 안전관리

발한실 안에는 온도계를 비치하고, 발한실 안과 밖에 이용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붙여야 한다.

다. 조명 및 환기

- (1) 발한실·휴게실·탈의실·접객대·복도·계단·현관 및 화장실 그 밖에 입욕자가 직접 이용하는 장소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휴식실·목욕실 및 세면시설의 조명도는 40룩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목욕실·편의시설·휴게실 및 휴식실 등에는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용량에 맞는 환풍시설 및 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기용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그 밖의 준수사항

- (1)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 (가) 감염병환자로 인정되는 자(온천수 또는 해수를 사용하는 목욕장으로서 환자의 요양을 위한 입욕시설에서 입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 (다)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준 수 사 항 (시행규칙 제7조관련, 개정 2012.12.11)

- (2)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 (3) 목욕실·탈의실·및 발한실에 종사하는 자는 남자목욕장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 목욕장의 경우에는 여자에 한하여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보조행위를 하는 자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5) 영업소 안에 목욕업신고증, 접객대에 목욕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6) 발한실 입구에 아래 해당자에 대한 입욕 주의문을 붙여 게시하여야 한다.
  - (가) 감기에 걸렸거나 만 5세 미만 또는 전신 쇠약 증세 어린이
  - (나) 수축기 혈압이 180mmHg 이상인 자
  - (다) 백내장이 우려되거나 안면홍조증 환자인 자
  - (라) 노약자·임산부·고열환자 및 중증심장병 환자
  - (마)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자
  - (바) 출혈을 많이 한 자
- (7)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의 영업자가 남녀 공용 발한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한복을 착용한 뒤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8) 숙박에 이용되는 침구류 등을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일시적 수면이나 휴식을 위한 대형타월 및 베개 등은 비치할 수 있다.
- (9)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
- (10)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시부터 05:00시까지 청소년(「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11) (10) 단서에 따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소년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 (나) 출입사유 및 출입허용 일시
  - (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전화·청소년과의 관계) 및 서명 (라)영업자의 확인여부
- (12) 영업소의 표시는 신고된 명칭(상호) 및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  
(시행규칙 제4조관련 별표2, 개정 2012.1.27)

I. 욕수의 수질기준

1. 원수

- 가. 색도는 5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나.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다. 수소이온농도는 5.8 이상 8.6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라.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mg/l 이하가 되어야 한다.
- 마. 총대장균군은 100ml 중에서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욕조수

- 가. 탁도는 1.6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목욕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제품을 첨가한 때에는 당해 제품에서 발생한 탁도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25mg/l 이하가 되어야 한다.
- 다. 대장균군은 1ml 중에서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판마다 30개 이하의 균체의 균락이 형성되었을 때는 원액을 접종한 평판의 균체의 균락을 평균하며, 기재는 반드시 1ml중 몇 개라고 표시한다.

3. 그 밖의 사항

- 가. 해수를 욕수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I 등급(수소이온농도, 화학적산소 요구량, 대장균 군수에 한한다)의 기준에 의하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은 원수는 II등급, 욕조수는 III등급기준에 준한다.

## II. 수질검사방법 등

1. 원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제2009-233호, 환경부고시, 2009.9.23]

다만, 욕조수의 대장균군검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대장균군시험기준 중 평판집락시험기준에 따른다.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제2009-174호, 환경부고시, 2009.8.24]

2. 욕조수의 대장균군을 검사하는 경우의 채수 방법은 욕조의 대각선(욕조에 대각선이 없는 경우에는 욕조의 양쪽 끝간의 거리가 긴 지점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욕수를 3등분하여 물의 표면에서 같은 양의 욕수를 채수하되, 균일하게 혼합하여 1개의 시료로 사용한다.

3. 욕수의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이화학시험용은 1개의 용기에 2 이상을 채취하여야 하고, 대장균군시험용은 멸균된 100ml 이상의 용기에 채취하되, 채취된 시료는 섭씨 10°C 이하의 저온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6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의 검사실에 도착하여야 한다.

기 준							
급	수소이온 농도 (pH)	화학적산소 요구량 (COD)(mg/L)	용존 산소량 (DO)(mg/L)	총대장균군 (총대장균군수 /100mL)	용매추출 유분 (mg/L)	총질소 (mg/L)	총인 (mg/L)
I	7.8-8.3	1 이하	7.5 이상	1,000 이하	0.01 이하	0.3 이하	0.03 이하
II	6.5-8.5	2 이하	5 이상	1,000 이하	0.01 이하	0.6 이하	0.05 이하
III	6.5-8.5	4 이하	2 이상			1.0 이하	0.09 이하



## 2014년도 온천종사자교육

---

**인쇄일** : 2014년 4월

**발행일** : 2014년 4월

**발행처** : 안전행정부,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1, 301호(당주동, 영진빌딩)

☎ 02-720-5004    전송 02-723-5003

**인쇄처** : 주식회사 나우 ☎ 070-4153-2012

---